

# 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|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 계    |                  | 9,764,424,098 | 292,932,723 |
| 일반회계   |                  | 8,907,420,820 | 267,222,625 |
| 특별회계   |                  | 857,003,278   | 25,710,098  |
| 기타특별회계 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857,003,278   | 25,710,098  |
|        |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 | 3,245,042     | 97,351      |
|        |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| 27,873,830    | 836,215     |
|        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| 483,096,162   | 14,492,885  |
|        |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    | 6,685,265     | 200,558     |
|        |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  | 21,674,989    | 650,250     |
|        | 소방특별회계           | 314,266,971   | 9,428,009   |
|        |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  | 161,019       | 4,831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5,824,21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15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2020년도에 한하여 연도 중 교부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한다.